

朝鮮時代 刻手の 石刻 活動考*

A Study on the Stone Carving by Engravers in the Joseon Dynasty

김 상 호(Kim, Sang-Ho)**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石材의 鑑別 |
| 2. 扁額 및 玉冊, 竹冊의 刻字 | 5. 결 언 |
| 3. 碑文의 刻字 및 補劃 | <참고문헌> |

<초 록>

재료가 석재인건 목재인건 刻手는 문자를 깨우치고 명필가의 예술적 筆致를 재현해야 하는 특별한 범주에 속한 장인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관점에서 석재에 문자를 남긴 刻手의 활동과 사실을 당시 역사서를 통해 확인하려는 작업이며, 刻手의 구분에 관한 논의의 빌미를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實錄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왕실 이 조성한 주요 비석에 관한 기록을 통해, 刻手가 단순히 책판이나 편액뿐만 아니라 玉冊이나 竹冊과 같은 중요한 문서, 그리고 석재에 비문이나 친문도와 같은 글자나 그림을 새긴 사람으로서 구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일에 대한 왕의 관심만큼이나 刻字의 일에 동원된 刻手의 숨씨 또한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要語: 각수, 비석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08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6일

<ABSTRACT>

Through the analysis of historical events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實錄) and the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that is, Sungjongwon ilgi(承政院日記), this article is trying to study the activities of engravers in the Joseon Dynasty. Engravers are very special craftsmen who recognize the Chinese letters and are capable of carving them on various materials, including stones and woods, according to the styles of famous calligraphers. They carve letters on gravestones, astronomical charts, and the royal family documents like Okchaek(玉冊), Jukchaek(竹冊), as well as wood blocks and tablets. The engraver's artistic products show the workmanship of the best quality, supported with the great interest in those engravings by kings in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Engravers, Gravestones

1. 서 언

刻手는 刻工으로도 불린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 각공은 단순히 ‘판목을 새기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¹⁾ 이는 刻手匠을 ‘목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일을 하는 장인’이라고 기술한 「한국고전용어사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²⁾ 「우리말큰사전」을 참고하면 刻手는 ‘나무나 돌 따위에 새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바,³⁾ 과거 문헌을 통해 石刻者로서 刻手の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英祖 13년 7월 1일의 「承政院日記」에는 그러한 刻手の 개념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만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책을 활자로 인출하면 刻手が 필요하지 않는데, 교서관 관원이 提調가 없을 때 삼남과 관동의 4도에 이문을 보내어 石刻手와 木刻手를 각 10명씩 推捉해 기만하였으니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⁴⁾ 刻手が 글자를 책판에 새기는 木刻手, 그리고 석재에 새기는 石刻手로 구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분이 당시 일반적인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헌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刻字할 재료에 따른 刻手の 구분 사실보다는 재료에 따른 刻字 일의 전문성이다.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刻手와 목판을 다듬는 鍊板, 목재를 켜는 木手の 명칭과 구실이 다른 것처럼 석재를 다듬는 石手와 석재에 글자를 새기는 刻手の 명칭과 구실 또한 문헌상에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원론적이지

1)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15.

2)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88.

3)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서울: 어문각, 1991), 58.

4) 承政院日記, 英祖13년 7월 1일 在魯曰 頃者勅行時 臣聞校書館官員 稱以儻禮都監所用文 移於外方諸道 多數推捉刻手 既到之後 各捧五兩錢而還送云 臣聞甚驚駭 而意謂芸閣因儻禮都監移文 而爲此舉 先問該都監 則初不知之云 故招問芸館之吏 取來文書見之 則果以御覽冊子及勅使時所用刻手 不足爲辭 而三南及關東四道石刻手木刻手各十名推捉 則四道或全數分定以送 或減送 或不送矣 衍義補內訓等書 皆以鑄子印出 元無使用許多刻手之事 儻禮都監亦非芸館所可干涉 而只爲徵錢之計 公然有此推捉之舉 事之無據 莫此爲甚 其時適值無提調之時 下吏與所任刻手 欺謾疲殘不省事之郎廳 致有此事 不可不重治懲後 當該郎廳劾職 該吏與所任刻手 竝令攸司囚禁 從重科罪 何如 上曰 依爲之.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몫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石刻과 木刻의 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재료가 석재이건 목재이건 刻手는 문자를 깨우치고 명필가의 예술적 筆致를 재현해야 하는 특별한 범주에 속한 장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관점에서 석재에 문자를 남긴 刻手의 활동과 사실을 당시 역사서를 통해 확인하려는 작업이며, 刻手의 구분에 관한 논의의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둔다.

2. 扁額 및 玉冊, 竹冊의 刻字

刻手가 책판을 새기는 것은 反書刻이고, 扁額을 새기기는 것은 正書刻이다. 대개의 경우 陽刻을 하게 된다. 玉冊이나 竹冊, 비석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正書刻에 陰刻이다.

刻手가 편액을 새긴 사실은 「宣祖實錄」 39년 4월 9일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成均館에 明倫堂을 짓는 일이 완료되어 편액에 쓸 세 글자를 널리 구하던 바, 마침 詔使의 필법이 뛰어나서 도중에 글자를 얻고, 詔使가 謁聖할 때 직접 볼 수 있도록 眞跡을 模刻할 정묘한 刻手를 엄선하여 하루 이틀 사이에 새겨 걸도록 한다는 것이었다.⁵⁾ 당시 명나라 사신 朱之蕃이 쓴 글씨는 당시 어떤 刻手에 의해 새겨져 오늘에까지 성균관에 전해진다. 英祖 연간의 「承政院日記」에는 대궐의 오랜 현판 옆에 새로운 현판을 거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 요지는 刻手에게 명하여 신판을 새기게 한다는 것이었다.⁶⁾

5) 宣祖實錄 198권, 39년 4월 9일 右承旨宋駿以成均館言啓曰 明倫堂之役 幸得粗完 而三字扁額 廣求寫出 則皆未愜意 詔使臨到 方爲渴悶之際 側聞詔使筆法甚妙 途中揮灑 不以爲憚云 故臣等共議 通書于遠接使 使之觀便稟請 則欣然寫給 卽日持來 庶可及期鐫刻 以羅詔使謁聖時觀瞻 而第慮模刻之際 一或失真 則殊爲未安 此非刻手之精妙者 莫能爲也 且日期甚迫 本館材料已竭 號令難便 送于都監 極擇良手 一依詔使分付模樣 一二日內刻完懸揭何如 右三字大額及小字二紙 竝爲入啓 傳曰 允.

6) 承政院日記 英祖 32년 5월 1일 上曰 舊板之年月日 今知之矣 命刻手翻置新板 當書而刻之 上大闕古懸板 皆刻年月日刻之 宜矣.

玉冊이나 竹冊은 왕실의 중요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仁祖가 생부인 定遠君을 元宗으로 추존하고 玉冊을 올리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이조판서 李貴는 玉冊을 올릴 때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玉冊을 올리되 그 글귀 중 ‘謹遣臣’ 이하 몇 자는 정련한 玉도 많고 刻手도 도감에 있어 만나절이면 고칠 수 있으므로 成宗 때의 예에 따라 바꿀 것을 청하였다.⁷⁾

이후 일이 끝나고 追崇 때의 모든 집사와 도감의 도제조 이하에게 공에 따라 상이 내려졌다. 玉冊 제술관 張維와 서사관 尹新之, 申翊聖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이 하사되고, 여러 담당 工匠과 下吏에게는 각각의 공로에 따라 물품이 하사되었다.⁸⁾ 당시 玉冊을 새긴 刻手 또한 그 가운데 포함된 것은 분명하다.

「承政院日記」에는 이 때 諡文을 새기는데, 외방의 刻手는 기술이 졸렬하여 당대 이름이 난 砲手 吳景男, 出身 趙咸, 別監 柳楠 3인을 등록하여 일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⁹⁾ 당시 다양한 신분의 인원이 刻手の 일로 명성이 난

- 7) 仁祖實錄 26권, 10년 4월 23일 吏曹判書李貴啓曰 今此進冊時 將依成廟朝故事 遣官行祭 云 成廟朝則義專大統 稱皇伯考 而月山大君奉祀 故遣大臣行祭 出於不得已也 今則既稱皇考 追崇上冊 此乃莫大之慶 又無拘礙之禮 而不得親進冊寶 則聖心將不無如不祭之懷矣 光海時 亦且親祭而進冊 則今日之遣官進冊 豈非欠典乎 都監都提調及堂上 亦與臣意無異 而禮官慮不及此 不過出於偶然 今者玉冊 雖已畢刻 而謹遣臣以下數字改刻之役 則不過半日之役 正鍊玉亦多 刻手方在都監 宜及此時 更令禮官 定以親祭 俾無後日之悔 上從之.
- 8) 仁祖實錄 26권, 10년 5월 11일 命論賞追崇時諸執事及都監都提調以下 右議政 金尙容 提調 吏曹判書李貴 各賜鞍具馬一匹 提調戶曹判書金蓋國 判尹金自點 禮曹判書崔鳴吉 都廳掌令韓亨吉 校理金南重 各加一資 前都廳鄭弘溟 賜半熟馬一匹 郎廳戶曹正郎黃胤後等六人 竝陞敘 監造官尹堦等九人 竝六品遷轉 進冊官領議政尹昉 進寶官左議政李廷龜 各賜鞍具馬一匹 題主官兵曹參議韓仁及 加資 大祝副司果閔光勳 準職除授 押玉冊官右參贊韓汝漫 押玉寶官知中樞朴鼎賢 各賜半熟馬一匹 讀玉冊官軍資監正姜大遂 執義李惟達 讀諡冊官典籍李景曾 讀寶官持平 吳達升 軍器寺正李行健 捧玉冊官兵曹正郎姜喬等四人 捧諡官典籍田大方等二人 捧寶官典籍李說等四人 代致詞官持平宋國澤 各賜半熟馬一匹 玉冊製述官新豐君張維 書寫官海嵩尉尹新之 東陽尉申翊聖 寶篆文書寫官禮曹參議金光炫 左副承旨呂爾徵 諡冊文製述官前承旨李明漢 書寫官都承旨金壽賢 各賜熟馬一匹 樂章文製述官大司成李敏求 賜半熟馬一匹 進冊寶時遣大臣祭終獻官禮曹參判尹昕 賜熟馬一匹 薦俎官僉知宋駿 大祝禮曹正郎申悅道 各賜半熟馬一匹 典祀官奉常主簿具炫 賜兒馬一匹 凡差備官等 或兒馬 或弓子 諸色工匠下吏等 皆賜物有差.
- 9) 承政院日記 仁祖 10년 4월 7일 陸敘欽以追崇都監言啓曰 諡文今當入刻 而外方刻手手法甚拙 殊可慮 砲手吳景男 出身趙咸 別監柳楠 自前習於此事 最稱精巧 此三人竝爲依瞻錄來役 宜當 敢啓 傳曰 依啓.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英祖가 그의 어머니 淑嬪 崔氏에게 竹冊을 올리는 일 있었다. 시일이 급박하므로 문서를 竹冊으로 만들기 보다는 인쇄할 것을 건의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英祖는 옥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라 하고, 璿源錄廳에 투입된 刻手와 목수를 잠시 해당 도감에 이송할 것을 허락하였다.¹⁰⁾ 특별히 竹冊文은 대제학 趙觀彬이 지어 바치게 하였으나,¹¹⁾ 다음날 趙觀彬이 그 일을 사양하였으므로 鞫問하여 유배를 보내고, 대신 좌의정 李天輔가 竹冊文을 짓게 되었다.¹²⁾ 며칠 뒤 親祭를 행하고 謚冊을 올렸으며, 竹冊文 제술관과 서사관에게 숙마 한 필을 面給하고, 여러 工匠에게는 쌀과 베를 題給하였다.¹³⁾ 實錄에는 그 해 ‘私親’ 두 자를 ‘先慈親’으로 고친 사실이 전한다.¹⁴⁾

3. 碑文의 刻字 및 補劃

英祖 20년의 「承政院日記」에는 領府使 徐命均이 상소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비석의 글씨 쓰는 일이 막중한데, 본인은 골절 통증으로 글쓰기가 어렵고 완력이 부족해 자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刻手가 글씨를 새김에 있어 착오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⁵⁾ 刻手가 여러 묘비와 신도비를

10) 承政院日記 英祖 29년 7월 28일 仍達曰 日子雖迫 既已定日 此亦關心處也 造印則似易而竹冊似難矣 上曰 易於治玉矣 益輔曰 都監日限甚迫 而刻手與木手 多數入役於璿源錄廳 姑令盡數移送都監 以爲事役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11) 「英祖實錄」 80권, 29년 7월 28일 命竹冊文大提學卽爲製進事分付.

12) 英祖實錄 80권, 29년 7월 29일 命觀彬定配之後 有職名往問人並罷職 命左議政李天輔製竹冊文.

13) 英祖實錄 80권, 29년 8월 6일 命上冊印官左參贊朴文秀 熟馬一匹面給 竹冊文製述官左議政李天輔 熟馬一匹面給 竹冊文書寫官 讀竹冊官 銀印篆文書寫官 行祭時執禮大祝 各熟馬一匹賜給 捧冊 印官各加一資 工匠等 令該曹米布題給 宮闈令李維新 加資 守直中官贊儀以下奏時官 各上弦弓賜給 守僕等米布題給.

14) 「英祖實錄」 80권, 29년 11월 1일 鳳漢曰 竹冊文中私親二字 已以先慈親改之矣 上曰 予無憾矣.

15) 承政院日記 英祖 20년 11월 12일 領府事徐命均疏曰 伏以臣病情支離 爲便調治 不得不

새긴 기록은 역사서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그 중 實錄과 「承政院日記」에 실린 몇 가지 사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實錄에서 刻手の 석각 활동이 실린 오랜 기록은 太宗 18년 4월 4일의 기사이다. 그 내용은 高陽縣 酸梨洞에 있는 昭頃公의 분묘 옆에 大慈菴이라는 암자를 세우고, 趙庸에게 墓誌, 卞季良에게 神道碑銘을 짓게 하였으며, 글씨를 쓴 成概와 刻手인 金有知, 僧 明昊 등에게 베, 쌀, 콩 등을 사급하였다는 것이다.¹⁶⁾ 昭頃公은 太宗의 넷째 아들인 誠寧大君으로 14살에 홍역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국왕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대의 명필가인 成概로 하여금 글씨를 쓰게 하였으니, 그의 글씨를 새긴 金有知와 刻僧 明昊 두 사람 또한 당대에서는 刻手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에 그 유적이 남아 있으며, 마모가 심해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운 신도비가 전해진다.

2) 仁祖 8년에 宣祖의 穆陵을 옮기는 일이 있었다. 이 때 誌石에 빠진 글자가 있어 좌의정 金瑬 등이 致察하지 못한 일로 待罪하였다. 그리고 단지 한 행만을 연마하면 비록 작은 흔적은 남겠지만 높낮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刻手の 의견을 빌어 미봉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仁祖는 모두 같아서 다시 쓸 것을 명령하였다.¹⁷⁾ 實錄에는 그 해 11월에 산릉도감총호사 金瑬와 제조 이하에게 각기 차등

昇還鄉寓 而疏籟未蒙矜察 至以旋即上京爲教 臣於是 不勝悶蹙之至 第臣手足腫核 漸至熾盛 方事熏洗 而居處靜暖 宜於將攝 且泄症今至六朔 尙未止歇 又自數日前 一倍添沬 度數無算 飲啖全廢 眞元虛脫 氣息綿悞 委頓床席 以此病勢 無路起動 奉承嚴命 萬無其望 懷惕震悸 不知所以爲計 惟俟重被譴何而已 卽伏聞營建廳賞典之下 臣亦蒙錫馬之恩 臣尤增殞越 蓋臣右臂 骨節腫痛 運筆甚艱 莫重碑役 有不敢承當者 而特命之下 辭免亦有所惶恐 未免強病書進 而腕力不足 字畫不成 且刻工亦多錯誤 臣方深悚慙 竊罪 反叨恩命之濫及 臣心已不敢自安 而賞典亦極屑越 茲敢冒死仰控微懇 伏乞聖明 曲賜諒察 鑄削臣職 以正負恩之罪 收回成命 以重噸笑之方 千萬幸甚云云.

16) 太宗實錄, 35권, 18년 4월 4일 命創昭頃公墳菴 墳在高陽縣北酸梨洞 菴號大慈 屬奴婢二十口田五十結 命前都摠制趙庸製墓誌 大提學卞季良製神道碑銘 皆使直藝文館成概書之 賜概黑麻布白苧布各二匹 刻手金有知僧明昊等三人 米豆并十石.

17) 承政院日記, 仁祖 8년 10월 17일 左議政金瑬 (缺)金尙容 戶曹判書金起宗 平城君申景禎 穆陵誌文 自藝文館 啓下送教單子于遷陵 (缺) 以此書草圖啓下後 始爲入石 而臣等恐

있게 虎皮와 豹皮、馬裝、耳掩을 하사하고, 여러 공장에게는 綿布를 하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⁸⁾ 현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안에 있으며, 비석이 전한다.

3) 仁祖 17년에 청나라의 전승비인 三田渡碑銘을 석각할 일이 있었다. 글은 이조판서 李景奭이 짓고, 글씨는 吳竣, 篆은 呂爾徵이 썼다. 당시 都承旨 李基祚는 1천 1백여 字에 이르는 비문을 속히 새기기 위해서 14명의 刻手를 좌우로 나누어 한꺼번에 작업을 시키면 5일 만에 그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⁹⁾ 결과적으로 석각의 일은 다음 달 6일에 완료한 것으로 同副承旨 李景義의 啓에 나타난다.²⁰⁾ 현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사적 제101호로 지정되어 전해진다.

4) 孝宗 즉위년 9월에 國葬都監에서 仁祖의 능인 長陵에 쓰일 誌石에 刻字할 일이 있었다. 同副承旨 李一相이 國葬都監의 郎廳, 摠護使의 의견을 빌어 誌文의 찬출이 더디 진행되어 글 쓰는 일이나 새기는 일이 늦어졌고, 날짜가 촉박하여 기일에 마치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다. 비록 刻手는 많지만 한 비석에 할당할 수 있는 수는 6,7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밤에 일을 하더라도 결국 발인하기 전에 완전히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부득이 堂上 尹新之와 誌石監造官 朴鋏을 교외로 보내어 독려할 것을 결정하였다.²¹⁾ 英祖 7년에 현재의 경기도 과주시

或有(缺) 多官齊會 非至再三相準 而光海時 有追上(缺) 舉 臣等未有所聞 思慮亦且不及 徽號中(缺) 道隆祚貽謨垂裕廣休延慶十六字 終至落(缺) 在都監不能致察之罪 極矣 惶恐待罪 且誌石(缺) 刻 計無所出 卽問于刻手 則只鍊磨第一行云 (缺) 而改書 則雖微有痕迹 而高低不至大段不平 (缺) 淺深計之 則不過去一分許 今姑依此爲之 (缺) 則雖盡磨全石 而改書鑄刻 工役則必無不及之(缺) 之 敢此竝稟 答曰 知道 勿待罪 且曩時所上(缺) 必載錄 若以爲不可不錄 則盡磨改書 可也.

18) 仁祖實錄 23권, 8년 11월 13일 賜山陵都監摠護使金塗及提調以下 虎豹皮馬裝耳掩各有差 諸工匠竝賜綿布.

19) 「承政院日記」 仁祖 17년 6월 25일 傳曰 碑文凡幾日盡寫 而完刻云耶 問啓 李基祚啓曰 碑文字數一千一百餘 可以盡寫 刻手則十四名 分左右 一時爲役 五日可以完畢云矣.

20) 承政院日記」 仁祖 17년 7월 7일 李景義以工曹言啓曰 碑閣所監役官趙昌門牒報內 碑文刊刻 今月初六日完畢 因以印出一張上送 刻手則姑爲放送 俾待後日聚會次放送云 故依所報爲之矣 印出碑文一張 亦爲入啓之意 敢啓 傳曰 知道 匠人竝給米布 以酬其勞苦.

21) 承政院日記」 孝宗 즉위년 9월 5일 李一相以國葬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誌石畢刻後

탄현면으로 옮길 때 석물과 함께 옮겨졌다.

5) 孝宗 3년 10월에는 廣州의 胎室 碑銘을 새기는 일이 있었다. 이 때 刻手를 해당 관사로 하여금 속히 하송하도록 하였으나, 교서관과 한성부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입석할 길일이 45일밖에 남지 않아 일이 몹시 궁색하게 되었으므로 본시 刻手를 관장하고 있는 교서관이 숨씨 좋은 刻手를 각별히 선발하게 하였으며, 밤에라도 내려 보내어 기일 내에 일을 마칠 것을 재촉하였다.²²⁾

刻手が 經籍의 印頒을 담당하는 교서관에서 선발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石匠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해당 관아로서는 보유한 십여 명의 刻字匠 가운데에서 그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는 刻手が 木刻手와 石刻手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기 보다는 개인, 또는 일의 정도나 경우에 따라 겸하기도 하고 따로 전문화되기도 하였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다.

관아에 소속된 石匠은 土木營繕을 담당하는 繕工監에 40명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江原道와 黃海道, 永安道에 각각 1명씩 등록되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수는 일정한 것이 아니었고, 필요에 따라 민간의 장인이 동원되었다.²³⁾

6) 顯宗 6년에 溫陽 溫泉에 行幸하였다가 行宮 밖의 오랜 비문을 다시 새길 일이 있었다. 世祖가 臨幸할 때 온천수가 용출하여 神井으로 여기고 비석을 세워 그 일을 기록하였는데, 이미 글자 획이 마멸되어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으므로 형조판서 金佐明의 건의를 받아들여 掖庭에 있는 刻手로 하여금 다시 새기도록

都監堂上郎廳各一員 陪進陵所事 載于各年曆錄矣 今年則誌文撰出最晚 以致書役刻役稽遲 兩役俱係敬謹 不可草率 日子促迫 恐未及期之意 曾已啓達矣 刻手雖多 一石所付不過六七名 雖爲夜役 而計日課工 則其勢決未及發引前完畢 不得已堂上尹新之 與誌石監造官朴欽 哭送郊外後 落後董役 畢刻監印後 卽爲陪進陵所 其房郎廳 則發引到陵所後 還爲入來 進上簇子 粧纘內入 仍爲陪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22) 『承政院日記』 孝宗 3년 10월 7일 又啓曰 廣州胎室碑銘刻字刻手 令該司急速下送之意 曾已入啓知委 而校書館漢城府 皆以無爲稱 不卽起送 立石吉日 在於十二日 自此去彼未滿四五日 今見該道監司移文 則事勢極爲窘迫 刻手本是校書館所管 令該館別擇善手 罔夜下送 使之及期完役 何如 傳曰 事極駭異 催促發送.

23) 『大典會通』 권6, 工典, 工匠 참조.

하였다.²⁴⁾掖庭은 왕명출납과 궁궐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법전에 등록된 工匠의 인원은 본시 있지 않다.²⁵⁾ 당시 어떠한 일로 刻手가 배치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7) 顯宗 13년 10월에 天文圖를 고쳐 새길 일이 있었다. 그런데 석재가 산지에서 늦게 도착하여 일을 겨우 시작하게 되었는데, 石刻 솜씨가 뛰어난 刻手 李琇一이 대왕대비전의 별감으로 마침 번의 차례가 되었다. 이에 잠시 그 번을 면하고 天文圖를 새기도록 조치하였다.²⁶⁾ 그것이 국보 228호로 지정된 太祖 4년에 만든 '天上列次分野之圖刻石'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그림과 문자가 복잡한 天文圖를 원판과 차이가 나지 않게 정교하게 수정해서 새겨야 했기 때문에 당시 이름난 刻手가 특별히 동원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8) 英祖 3년 5월에 충청감사 申思喆이 林川의 宣祖 胎室 비석이 손상된 일로 보고한 일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손상된 글자의 획은 비석 앞면의 '主上殿下胎室'이라는 여섯 글자 가운데 '主'자와 '上'자, '胎'자, 그리고 비석 뒷면의 '主'자 등 네 글자였다. 이에 태실의 수호를 감당한 관원과 서리, 刻手 등을 불러 들여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다. 그 결과 이미 경자년에 군수 朴鏜이 봉심할 때 비석의 석재가 약해서 비바람에 흠결이 생긴 것을 보고, 임의로 白蠟을 써서 보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감사가 직접 봉심하고 비록 비석의 손상된 글자 획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일 자체가 중대 사안이라서 보고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일은 솜씨 좋은 장인을 예조의 관원이 데리고 가서 그 상태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朴鏜은 보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조치한 죄로 拿問되는데 이르렀다.²⁷⁾

24) 顯宗改修實錄 13권, 6년 5월 1일 佐明曰 行宮之外有古井 曾聞世祖朝臨幸時 泉水湧出以爲神井 立碑記事 至今尚存 而字畫漫漶 不可識 竊聞掖庭有刻手 請使之改刻 上從之 .

25) 『經國大典』 권6, 工典, 工匠 참조.

26) 承政院日記 顯宗 13년 10월 20일 天文圖改刻事 春間曾已定奪 石刻可合之石 令所產邑伐出以送 而該邑趁不舉行 故待其輸來 今纔磨治始役矣 刻手李琇一 最善石刻 擔當是役 而琇一以大王大妃殿別監 值其番次 則刻役未免停輟 姑令除番 以爲完役之地 何如 傳曰 允

27) 承政院日記 英祖 3년 5월 25일 申思喆所啓 此卽忠淸監司 以林川胎室碑石傷缺事啓聞

현재 충남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에 있는 宣祖의 태실비는 비석의 앞면에는 ‘宣祖大王胎室’라 적혀 있는데, 이는 宣祖 3년(1570)에 처음 건립되었던 것이 글씨가 많이 닳아서 결국 英祖 23년(1747)에 다시 세운 것임을 비석 뒷면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9) 英祖 31년에 太祖의 고향인 영흥 黑石리에 비각을 세운 일이 있었다. 당시 함경감사 金漢喆은 지역 내에 비록 석수와 刻手가 약간 명이 있지만 모두 솜씨가 뛰어나지 않아서 初磨 정도는 할 수 있으나, 正鍊과 細琢, 그리고 처마를 얹고 龕臺를 조각하는 일은 잘 할 수 없다고 하여, 중앙관사에서 솜씨 좋은 장인을 몇 사람 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결국 솜씨 좋은 석수 3명과 刻手 4명이 선발되어 현지에 파견되었고,²⁸⁾ 그 해 4월 碑와 閣이 완성되어 영흥부사 李邦綏에게 熟馬, 감사 金漢喆에게 豹皮를 하사하였으며, 碑陰을 베껴 쓴 趙明履는 加資한 것으로 實錄에 전한다.²⁹⁾

者也 事體重大 有不可循例覆奏 故敢此仰達 此狀啓 爲碑刻主上殿〈下〉胎室六字內 主字上字胎字之畫 傷缺 碑後所刻主字之畫 亦有微缺之痕 而守護監官及色吏刻手等招內 庚子年郡守朴鏜奉審時 碑石品似柔順 刻釘所傷 風磨雨洗 自爾致傷 故自官 以白蠟補畫 以致還落成痕云 故監司親詣奉審 則碑石字畫傷缺處 雖不至大段 而事體重大 故有此馳啓云 而前郡守朴鏜 不爲稟報 用蠟補畫 殊欠敬謹 其罪狀 仍請稟處事 啓下本曹矣 臣取考本曹謄錄 則壬戌年 林川胎室碑文前面六字 後面四字 字畫有破傷之變 故本曹堂上與本道監司 眼同奉審 而傷痕不至大段 故仍舊磨治補刻矣 辛卯年 又有上字殿字胎字 字畫傷缺之患 而以其時印紙觀之 破傷極爲大段 故有修改之意 而其時大臣及禮官 以宣祖大王胎室碑石之以中朝年號刻建者 今若改刻以卽今年號 極爲重難之意陳達 則自上 以仍用舊石而磨刻事 下教矣 今以此狀啓 及頃日內下碑文印紙觀之 碑石字畫傷缺處 與辛卯年 不至大段 其在慎重之道 姑觀前頭 或恐無妨 雖或有改豎之舉 仍存前碑 無改舊觀 略加磨治 似合便宜 下詢於大臣而處之 何如 洪致中曰 臣亦見其印本 傷缺處不至大段矣 若令禮官 率匠手奉審 隨其傷處 略加補畫 似好矣 李宜顯曰 臣則以爲禮官率善手匠人 下去奉審 詳察其字畫傷缺處然後 處之 爲宜矣 上曰 碑石雖爲改豎 當仍書隆慶 何必書以卽今年號耶 辛卯年破落處 比諸今番 尤爲大段 而不爲改豎 聖意所在 今可仰體 禮官下去奉審後 隨便修改 而或以白蠟填缺 無妨矣 前林川郡守朴鏜 不爲稟報 任自填蠟 事甚可駭 拿問處之 可也.

28) 承政院日記 英祖 31년 1월 18일 益炆曰 卽接咸鏡監司金漢喆所報 則刻手石手 道內雖有若干名數 而手才俱皆庸拙 初磨則雖可爲之 正鍊細琢及加簷龕臺雕刻之役 決不可善爲 自京司善手匠人 優數定送爲請 事勢果如所報矣 善手石手三名 刻手四名 擇定下送 何如 上曰 依爲之.

29) 英祖實錄 84권, 31년 4월 18일 永興黑石里 碑與閣成 賜永興府使李邦綏熟馬 監司金漢

10) 高宗 36년 7월에 왕실의 여러 사적지에 비석을 세우는 일이 논의되었다. 穆祖의 潛邸 터가 있는 전주와 삼척, 그리고 太祖가 잠시 머물렀던 梧木臺 등에 宣祖를 찬양하는 도리로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전하겠다는 것이 高宗의 뜻이었다. 여러 비문은 왕이 직접 짓되, 그 글씨에 있어서는 濬慶墓의 비문은 李根命이 써서 올리고, 永慶墓의 비문은 閔丙奭, 活耆洞의 비문은 朴箕陽, 滋滿洞의 비문은 강찬, 梧木臺의 비문은 金永穆, 完山의 비문은 李完用이 써서 올리도록 하였다. 다만 비석을 마련하고 글을 새기는 데 있어서는 중앙에서 비석을 다듬어 글을 새겨 보내는 방법과 각 해당 지역에서 돌을 떠내고 석공과 刻手는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결국 삼척의 경우는 묘소 가까이에서 돌을 떠낼 수 있고 품질도 쓸 만하여 營建廳 堂上이 미리 해당 군수에게 훈령을 보내 기일에 앞서 돌을 떠내어 다듬어 놓고 비문이 내려가기를 기다려 새기도록 하였고, 전주의 경우는 이미 봉심한 宰臣이 조치하여 지방관아에서 알아서 거행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삼척의 경우 3坐의 비석을 세워서 공사가 큰 만큼 營建廳 堂上 李重夏의 건의에 따라 솜씨 좋은 石工을 선발하여 먼저 내려 보내게 되었다.³⁰⁾ 위의 흑석리 비석의 예에서와 같이 석수가 돌을 떠내고 다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으로 서 刻手와 엄연히 구분된 사실을 밝혀주는 기사이다.

喆豹皮 以董役勞也 加趙明履資 以碑陰書寫勞也.

30) 高宗實錄 39권, 36년 7월 11일 容善曰 碑文親撰有命 則三碑書寫官 令宮內府擬入何如上曰 濬慶墓碑李根命書進 永慶墓碑閔丙奭書進 活耆洞碑朴箕陽書進 滋滿洞碑姜찬書進 梧木臺碑金永穆書進 完山碑李完用書進 定熙曰 碑石有自京磨礱刻送之例 有自本道浮出 碑文郎廳陪進 石手刻手自京下送 印本簇子二件封進之例 今番則何以爲之乎 上曰 向聞奉審宰臣所奏 三陟則墓所近地 可以浮石 石品合用云 不必自京下送 營建堂上豫爲發訓於該郡守 先期浮出磨礱 待碑文下去 使之善刻 郎廳不必陪進矣 全州則奉審宰臣 似已區別道臣自當舉行矣.....重夏曰 三陟 碑石爲三坐 而石役鉅重 石手宜先下送 浮石莫重之事 須有國役慣熟之人 可以等摘 擇送工匠 而別監董宋啓昌有身病 不得相議 故工匠至今未送 物財亦未區劃 日字延拖 事甚惶悶矣 上曰 物財與度支大臣相議支出 工匠則擇善手下送可也.

4. 石材의 鑑別

顯宗 14년에 孝宗의 寧陵을 옮길 일이 있었다. 원래 현재의 동구릉 자리에 조성하였는데, 석물에 틈이 나 빗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어 지금의 여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석물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刻手를 강화에 보내어 돌을 골라 오게 하여 과거에 석물에 쓰였던 돌과 색이나 품질에서 차이가 없는 지를 비교하였다.³¹⁾ 그 일이 있고 한 달 보름 뒤에 藥房都提調 金壽興이 날짜가 급박하므로 글씨를 쓰는 대로 세겨야 하는데, 솜씨 좋은 刻手가 많지 않아서 염려되는 뜻을 아뢰기도 하였다. 비록 刻手가 십여 명이 있지만 솜씨가 좋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여섯 자나 일곱 자를 새길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었다.³²⁾ 보통의 刻手가 하루에 6, 7자를 새겼다는 사실, 그리고 刻手가 좋은 석재를 고르는 일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英祖 20년에 임진왜란 때 파괴된 齊陵의 예전 神道碑를 다시 세울 일이 있었다. 齊陵神道碑營建廳에서 비석으로 쓸 석재를 얻기 위해 감역관 李福海이 석수와 刻手를 데리고 여러 돌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 결과 玄江에 있는 돌은 크기는 크지만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土亭에 있는 돌은 이미 初鍊하였는데 淡靑色으로 흠결이 없고 江陰石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正鍊하면 그 색이 아름답고 글자 새기기도 더욱 좋을 것이며, 크기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³³⁾ 그 뒤 두

31) 顯宗改修實錄」 27권, 14년 7월 7일 山陵都監啓曰 下玄宮擇日 與啓舊陵之日 其間只隔七日 以前日已行之事言之 則似無凡事未及之患 而其在慎重之道 不可不加擇吉日 故令地官潘好義等推擇 則皆以爲十月二十五日大吉云 請以此日啓下 以爲前頭觀勢進退之地上可之.

「承政院日記」顯宗14년 7월 7일 李之翼以山陵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江華下去刻手 今始還現 新浮石片 亦爲持來 見其色品 則新得之石 與舊石別無異同 其中一塊(缺)精細之實豫差 竝四件採來云 以此擇用 宜當 新舊石三片封進 以備睿覽之意 敢啓 傳曰 知道.

32) 承政院日記 顯宗 14년 8월 24일 壽興曰 日子甚迫 畢刻似難 故書一字 則卽爲付而刻之 書一行 則亦卽付而刻之 蓋刻手十餘名 而善手不過五人耳 其餘不過日刻六七字 慮有窘迫之患耳.

33) 英祖實錄 59권, 20년 7월 29일 宗臣礪恩君梅上書 略曰 全州太祖大王眞殿 古有豎碑記蹟之議 先王朝道臣狀聞 湖儒疏陳 逮至己未 李聖昌等又疏請 聖批許之 而尙拋置不舉 齊陵舊神道碑 卽權近所撰也 壬辰之亂 爲賊搥碎 前因道臣狀請 大臣覆奏 有待年事稍稔

달이 채 못 되어 齊陵 神道碑를 고쳐 세우는 일을 마치고 도감의 여러 신하들이 차등 있게 상을 받았다.³⁴⁾ 신도비의 석재를 고르는 일에 있어서 석수만이 아니라 刻手의 견해가 중요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5. 결 언

역사서의 기록을 통해 刻手가 단순히 책판이나 편액뿐만 아니라 玉冊이나 竹冊과 같은 중요한 문서, 그리고 비석이나 천문도 같은 석재에 글씨를 새긴 사람으로서 구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實錄과 承政院日記에 기재된 刻手의 석각, 또는 석재의 감별활동은 대부분 왕실의 주요 비석의 조성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 일에 대한 왕의 관심만큼이나 刻字의 일에 동원된 刻手의 숨씨 또한 남달랐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 주요한 役事에 당대 일류의 刻手들이 동원된 사실로 미루어 전문화된 그들을 각별히 石刻手로 구분했을 만한데, 문헌의 여러 기록에서 石刻手와 木刻手의 구분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단지 석수와 차별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刻手가 그 서사재료에 따르기 보다는 刻字의 일로 전문성이 인정되었던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는 刻手가 본시 교서관 관장 하에 있다는 孝宗 연간의 기사에서도

并與英陵舊埋之碑一體舉行之教 乞命并豎以彰列聖之至德 承政院日記, 英祖 20년 9월 13일 又以齊陵神道碑營建廳言啓曰 碑石之取用私儲 既有成命於再昨入侍時矣招致石工等 廣搜有處 則以爲玄江及土亭 果有可合碑石 故臣等與監役官李福海 率石手刻手邊手等 昨日食後 親往看審 則玄江所在之石 長廣厚薄 則雖有餘 而但石品不精 土亭所在之石業已初鍊磨礪 而龍頭長二尺六寸五分 龍頭下長 七尺八寸 厚一尺三寸 廣三尺二寸五分 而淡青色無一欠 又是江陰所浮出 故問於石手刻手等處 則皆以爲此果江陰石最好者 若復正鍊細磨 則石色必佳 刻字尤好云 且以列聖誌狀中 本陵神道碑字數 依建元陵神道碑字樣磨鍊 則此石長廣 可無不足之患 今若捨此當用之石 而新爲浮出 則日子必將遷就 以此石取用 何如 傳曰 允.

34) 「英祖實錄」, 60권, 20년 11월 4일 改豎齊陵神道碑 碑毀於壬辰倭奴之變 列朝未遑改立上因宗臣疏請 命設營建都監 改豎之 復用誌狀所載權近所撰碑文 又命奉朝賀李宜顯作陰記 至是告訖 施營建勞 賞都監諸臣有差 參判柳儼 參議鄭益河 并加資.

확인한 바이다.

어쩌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건수가 빈번하지 않은 책판 새기는 일보다는 편액이나 비석 새기는 일이 刻手の 공급을 필요로 하는 민간의 간단없는 일상 사였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太宗實錄」

「宣祖實錄」

「仁祖實錄」

「顯宗改修實錄」

「孝宗實錄」

「英祖實錄」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1.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 研究.” 「도서관학」 20집(1991. 6). 331-404.

김상호. “妙法蓮華經玄義, 法華文句記의 刻手 研究.” 「서지학연구」 30집(2005. 6). 45-59.

